

행 정 자 치 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단위서열명부(국 단위) 순위 변경 등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대 상 자 ① 강원도 ○○○○과(전 ○○○○관실) 지방○○○○○ ○○○

② 강원도 ○○○○관실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1. 2.부터 2015. 12. 31까지 인사업무 실무 책임자, 지방○○○○○ ○○○은 2013. 7. 2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실무 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1. 단위서열명부(국 단위) 순위 변경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 2제5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에서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된 직무대리 장기운영상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2015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작성하면서 직무대리자들의 지정 순서를 반영하여 승진임용시키고자 각 실·국 등 평정단위별로 서열 명부를 2015. 7. 10까지 제출받은 후 이를 그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래 ‘평정단위별 서열 조정 현황’과 같이 평정단위별로 제출받은 순위와 다르게 평정단위별 직위승진(직무대리)자들의 순위를 일부 조정하도록 ○○○○국, ○○○○○○원 등 인사담당자들에게 안내한 후 (2015. 7. 14~2015. 7. 16경, 정확한 날짜 기억 못함) 변경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전체 순위를 재조정·작성한 다음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2015. 8. 심사·의결을 받았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도 인사담당자의 조정으로 평정단위별 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인사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015년 상반기 평정단위별 서열 조정 현황

소속	직급	성명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국 단위)	근무성적 평정표상 최종 서열명부	직위승진일 (직무대리)	승진일자	비고
○○○○○○원	지방○○○○○	○○○	1위 (2015.6.30.)	7위	2015.7.14	2015.11.16	
○○○○국	지방○○○○○ (○○분야)	○○○	5위 (2015.7.1.)	1위	2015.7.14	2015.7.22	
○○○○국	지방○○○○○	○○○	5위 (2015.7.1.)	1위	2015.6.26	2015.8.13	
○○○○국	지방○○○○○ (○○분야)	○○○	10위 (2015.7.1.)	1위	2015.6.26	2015.12.23	

○○○○국	지방○○○○○ (○○분야)	○○○	11위 (2015.7.1.)	2위	2015.6.26	2015.12.23	
○○○○국	지방○○○○○ (○○분야)	○○○	6위 (2015.7.1.)	1위	2015.6.26	2015.12.23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2.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4에 따르면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7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심의·의결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인 ‘부지사’로 운영해야 함에도 법적 권한이 없는 총무행정관을 위원장으로 구성·운영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